

Lutheran, ed. Denis Janz, New York and Toronto: The Edwin Mellen Press, 1982.

_____. 지원용 편. "대교리문답서." 『루터선집』, 9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3.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Ozment, Steven, *The Reformation in the C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Volume 1: 1523-1552. ed. James T. Dennison, Jr.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8.

Scharffenorth, Gerta. "The Ecumenicity of Luther's Catechism." *Mid-Stream*, 23/2 (April 1984): 162-175.

Snyder, Arnold. "Modern Reality and Anabaptist Spirituality: Balthasar Hubmaier's Catechism of 1526." *The Conrad Grebel Review*, 9/1 (Winter 1991): 39-51.

Wengert, Timothy. "Forming the Faith Today through Luther's Catechisms." *Lutheran Quarterly*, Vol. 11 (1997): 379-396.

Williams, George H. *The Radical Reformation*. Truman State Univ. Press, third edition 2000.

취리히 시에 남겨진 종교개혁의 유산: 16세기 『결혼법령』을 중심으로

권선중 (취리히 대학 역사신학 박사과정)

I. 서론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Wir sind Protestanten!)¹⁾ 지난 7월 스위스 대표적 언론기관인 Neue Zürcher Zeitung에서 발간하는 역사 정기간행물의 제목이었다. "어떻게 종교개혁이 스위스를 부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종교개혁이 스위스 사회에 미친 경제적 공헌²⁾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였다. 13세기부터 연맹체제로 시작되었던 스위스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칸톤(Kanton, 州)과 로마 가톨릭 칸톤으로 나뉘어 서로 다르게 발전하였다. 칼뱅의 직업 소명설이나 근면정신은 개신교 칸톤에 영향을 주어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19세기 본격적인 스위스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 Martin Beglinger, "Wir Protestanten." Wie die Reformation die Schweiz reich gemacht hat: in *Neue Zürcher Zeitung Geschichte Nr. 2 Juli* (Neu Zürcher Zeitung, 2015), 24-39.

2) 위의 책, 25쪽. 현재 유럽의 경제사정은 개신교가 우세한 북유럽과 로마가톨릭이 우세한 남유럽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북유럽은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세계 제 1의 복지국가로 정평이 나 있는 반면에 남유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흥미롭게도 이 글에서는 유럽의 경제적인 차이를 기후나 국민성 등 환경적 사회적인 요소가 아닌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의 차이 즉 종교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바젤과 취리히는 산업과 상업과 무역을 통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였고, 특히 귀족들은 일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으며, 교회력에 따른 공휴일도 개신교 칸톤보다 월등히 많았다.³⁾ 이러한 차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점차 사라져 가톨릭 중심의 도시들도 개신교 중심의 도시들을 따라 노동에 참여하였고, 현재의 부유한 스위스를 만들어내는 데 이바지하였다. 오늘날의 부유한 스위스는 개신교 신학과 신앙의 유산이며, 이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모두 개신교도들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⁴⁾ 21세기의 스위스를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언급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개혁의 1세대인 마틴 루터와 츠빙글리의 사상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루터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인간의 내면적인 관계에 중심을 두었다면, 츠빙글리는 교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삶에 중심을 두었다. 츠빙글리 역시 인간 내면의 종교적인 욕구를 다루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관계성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 관계 뿐 아니라 시, 사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⁵⁾

이처럼 사회와 공동체에 관심을 두었던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특히 취리히 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취리히 대학 종교개혁 연구소 소장이었던 캄비(Emidio Campi)⁶⁾에 따르면, 종교개혁은 취리히 시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3) 위의 책, 36쪽. 칼빈주의자들은 일 년에 5일간의 공휴일이 있었으나, 그와 반대로 가톨릭은 70일까지 있었다. . . 교회당을 짓는 일에도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건물 안에서 저절로 경외의 마음이 생기도록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지었다면, 개신교 도시의 교회들은 절약과 근검이라는 자신들의 사상에 맞게 최대한 간단하게 지었다. 베른(개신교)과 루체른(로마가톨릭)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4) 위의 책, 39쪽.

5) Hermann Escher, "Zwingli als Staatsmann", in: *Zwingliana V*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31/5-6), 297.

유산을 남겨 놓았다. 첫째, 목회자들의 성서연구 모임인 예언자 모임(Prophezei)은 취리히 대학의 모체가 되었고, 이렇게 취리히 시에서 고등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둘째, 자선제도(Mushafen)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내국인이나 외국인에게도 자선을 베풀었고, 동시에 개인적인 자선은 금지되었다. 셋째 결혼법령(Ehegericht)을 제정하였다. 중세 가톨릭은 결혼을 신앙의 성례(Sakrament)로 받아들였다. 이와 달리 취리히 시는 결혼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서 결혼성립(Eheschliessungen), 이혼(Ehescheidungen), 간음(Ehebruch, Hurerei), 배우자의 병환(Krankheit des Partners) 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 중의 하나⁷⁾라고 평가 받고 있는 『취리히 결혼법령(Zürcher Ehegericht)』에 관한 것이다. 21세기 스위스에서 여전히 16세기의 종교개혁이 회자되는 이유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취리히 시에 미친 사회적 영향 때문이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무엇보다 사회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겼고, 사회와 긴밀히 연결하여 개혁을 이루어갔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종교개혁으로 인한 결혼과 가정의 변화로 보고 있다. 발터(Walther Köhler)에 따르면, 1525년에 제정된 『취리히 결혼법령』은 결혼에 관련한 최초의 법령으로서 취리히 뿐 아니라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 전체와 스트라스부르와 제네바의 칼뱅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⁸⁾ 『

6) Emidio Campi, "Erbe und Wirkung der Zürcher Reformation" in: *Christliche Arbeitsmoral, Sozialstaat und Globalisierung*.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7), 39-50.

7) Walther Köhler, *Zürcher Ehegericht und Genfer Konsistorium*. 2 Bd. (Leipzig, 1932/1942). (Quellen und Abhandlungen zur Schweizerischen Reformationsgeschichte 10 und 13) I. Das Zürcher Ehegericht und seine Auswirkung in der deutschen Schweiz zur Zeit Zwinglis. Vorwort IX.

8) 발터는 『취리히 결혼법령』을 부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결혼 생활의 지침을 제시해주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의 중재를 위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취리히 시에 결혼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그에 따르면, 『취리히 결혼법령』은 제네바의 결혼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두 번째 책에서 제네바의 결혼법령과 컨시스토리에 관한 연구를 수록하였다.

취리히 결혼법령⁹⁾이 실제로 컨시스토리와 제네바의 법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취리히 결혼법령』이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제정된 취리히 최초의 법령이라면, 그의 후계자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의 저서인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Der christliche Eestand(1540년)』에서는 결혼, 이혼, 독신 제도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었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취리히 결혼법령』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에 이르기까지 취리히 시의 혼인질서가 어떻게 세워져 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종교개혁 연구는 주로 교리와 신학 논쟁에 치중되어 왔고,⁹⁾ 또한 제네바와 칼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취리히 종교개혁을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과 종교개혁의 사상이 얼마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 현실과 맞닿아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구체적인 가르침은 사변적이고 현학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오늘날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종교개혁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취리히 결혼법령(1525)』에 나타난 결혼과 이혼

『취리히 결혼법령』은 1525년 취리히 의회에서 3명의 사제들, 그로스뮌스터의 홀드리히 츠빙글리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 Huldrych Zwingli), 성베드로 교회의 레오 유트(St. Peterskirche, Leo Jud), 프라우뮌스터의 하인리히 엔겔하르트(Fraumünster, Heinrich Engelhardt)가 참석한 가운데 1525년

9) 박경수, “16세기 제네바의 약혼, 결혼, 이혼에 관한 법령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Vol.47 Nr.2』 (2015.6) 45.

5월 10일에 만들어졌다. 캄비에 의하면, “결혼과 도덕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모든 권리들을 그의 손에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취리히 세속 권세의 목표이다.”¹⁰⁾라고 하였다. 이미 종교개혁 이전부터 취리히 시의회는 콘스탄츠 주교의 주권을 분리해내고자 하였고, 그들의 주권과 상관없이 취리히 시의회만의 결혼법(Eherecht)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중세 교회가 신앙의 성례로 여긴 결혼을 법적이고 목회적 신학적 근거 위에서 자신들만의 결혼법령을 규명하였다. 그들은 결혼서약(Eheschliessungen), 결혼장애물(Eehindernisse)을 정하고, 이혼(Ehescheidungen)과 간통(Ehebruch), 성불능(Impotenz), 나쁜 의도적인 가출(böswilliges Verlassen), 배우자의 병환(Krankheit des Partners) 등에 대해 새롭게 법규를 만들어냈고, 결혼이 “함께 사는 것(Zusammenleben)”임을 확실히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령은 취리히 시 전체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526년에 이미 결혼법은 도덕규범으로 확장되었고, 시골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¹¹⁾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법령은 더 강력하게 발전되었다. 즉 예배의 소홀함과 간음, 간통은 출교로 처벌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만찬 축제의 참여를 지시하였으며, 성례전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¹²⁾

1. 결혼법 제정의 목적과 재판의 과정

『취리히 결혼법령』은 결혼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결혼법령의 부재로 인해 혼란했던 사회의 질서를 바

10) Emidio Campi, “Erbe und Wirkung der Zürcher Reformation”, 46쪽.

11) Das Ratsmandat “Ordnung und ansehen, wie hinfür zuo Zürich in der stadt über elich sachen gericht soll werden” EAK의 990번에서 찾을 수 있다.(1526년 7월 13일), 위의 책에서 재인용. 46쪽.

12) 위의 책, 1656번(1530년 3월 26일, 1832번(1532년 3월). 재인용 47쪽.

로 세우고, 콘스탄츠 주교와 상관없이 취리히 시민의 독립적인 법령을 제정하고자 함이다. 또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복잡한 소송과정으로 시간과 물질적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혼 법은 취리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혼재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¹³⁾

법령 안에는 제일 먼저 결혼 재판을 준비하고, 재판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판결자는 6명이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2명의 취리히 시 목회자(Leutpriester)와 2명의 소의원(Der kleiner Rat)과 2명의 대의원(Der Grosser Rat)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두 달 간 재판장이 되며, 그는 다른 판결자들을 부르고 모아서 결혼법률에 의거하여 소송된 사건들을 잘 판결해야 한다. 둘째, 재판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거행되어야 하며, 재판 날짜와 장소는 재판장이 정하여 게시를 하고, 오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미리 서기에게 누가 재판소 직원(Weibel)으로 일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 직무를 이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원에게 다른 사람을 데려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어떤 재판장이든 본인의 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직원을 통해 구두나 문서로 재판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판결을 하는 자는 편지와 인장을 들고 국가(Obrigkeit)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재판을 위해 조언이 필요하거든, 8일간의 준비 기간을 허락하지만, 재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¹⁴⁾

13) Emil Egli, Actensammlung zur Geschichte der Zürcher Reformation in den Jahren 1519-1533, Zürich 1879, Nr. 711, 326-327. “지금까지 혼인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지... 그래서 콘스탄츠와 상관없이 다른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복잡한 법적 소송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14) 위의 책, 327쪽.

2. 결혼(Ehe)

『취리히 결혼 법령』에 따르면, 결혼은 적어도 2명의 신실하고 존경할만한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도시나 시골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다. 또한 보호자 즉 아빠, 엄마, 영주(Vogt)의 동의 없이 약혼자를 취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처벌을 받으며, 그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19세가 되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세 이전까지 한 아이는 아빠, 엄마, 영주(Vogt), 관리인(Verwalter)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만일 19세 이전에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결혼을 할 수 있고, 19세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혹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보호자도 자녀의 동의 없이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그 결혼은 무효이고, 그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정당하게 성립된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18장에 근거하여 친족을 범하는 일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금전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¹⁵⁾

이렇게 16세기 취리히에서 결혼은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그들의 보호자의 의사까지도 존중되어야 한다. 자녀들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보호자는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야 결혼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상호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정략결혼은 결혼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여자는 최소 14세 이상, 남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동의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당사자의 사랑을 존중하는 결혼 개념은 현재에까지 널리 통용되는 시대를 앞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거짓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의 기도와 증인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각 목회자는 공개적으로 결혼을 선포해야만 한다. 어느 누구도 공개적인 동의 없이 그들의

15) 위의 책, 328쪽.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다.¹⁶⁾ 취리히에서 결혼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동의 일이 되었다.

3. 이혼(Ehescheidung)

『취리히 결혼법령』은 다음과 같이 이혼 사유를 규정¹⁷⁾하고 있다. 첫째, 경건한 부부기간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공식적인 간통을 하였을 경우, 간통을 하지 않은 사람은 떠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결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간음에 대해서는 결혼법에 근거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해야 한다. 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규명하고 있는지 살펴 본 후, 판결하되, 간통은 중한 벌에 처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서 돌로 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간통한 자를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고, 제명해야 한다. 이렇듯 간통은 성서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혼의 유일한 사유이다. 여기서 배우자는 남과 여를 구별하지 않는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통의 처벌과 이혼의 과정은 동등하게 이루어졌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부정을 피해야만 한다. 그러나 부정이 여러 번 반복되어 발견된다면, 결혼에 부적합하고 그들은 1년간 서로 살아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혹 나아지려고 하는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다시 나아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혼하고 다른 짝을 만나 결혼하도록 해라. 간통으로 삶이 깨지고, 허락 없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없다면, 재판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규정은 모든 목회자가 부지런히 반복해서 공표하고, 경고해야 한다.¹⁸⁾

16) 위의 책, 328쪽.

17) 위의 책, 329쪽.

18) 위의 책, 329쪽.

III. 불링거의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Der christlichen Eestand 1540』에 나타난 결혼, 이혼, 독신제도 및 결혼 생활의 지침

츠빙글리의 갑작스런 죽음 후에, 그로스뮌스터의 후임 목회자로 청빙된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는 44년간(1531-1575) 목회하면서 견고한 신학적 토대 위에 취리히 종교개혁을 발전시켜 나갔다. 목회기간에 쓴 그의 저서는 방대하여 라틴어와 16세기 독일어로 된 서신 만해도 12,000개에 달한다. 현재에도 취리히 대학 불링거 연구소에서 그 서신을 번역, 편집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 가운데 결혼은 불링거의 지속적인 관심 주제였다. 불링거는 히브리서 13장 4절을 주석하면서 “결혼”, “간음(Hurerei)”과 “간통(Ehenbruch)”을 언급하였고, 후에 결혼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었는데, 그 첫 작품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완전한 수업 Volkommne Unterrichtung desz christlichen Eestands』(1527)이다. 또한 그는 1527년 9월 30일자 편지에서 “신랑지원서”를 썼고, 1528년 2월24일자 교리문답 편지에서는 미래의 부인에게 “결혼 안내서”와 “남자와 여자의 책임”을 써서 보냈다. 그리고 히브리서(1532), 고린도전서(1534), 에베소서(1535)를 주석하면서, 1540년 2월에 결혼에 대한 주요 저서인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Der christlich Eestand』를 출판하였다. 이후에도 설교 가운데서도 광범위하게 “결혼에 관한 안내서”를 다루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첫 번째 장에서는 결혼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결혼의 존엄성과 영예로움을 자세히 묘사한다. 결혼을 반대하는 것에 논박하고, 어떻게 나에게 맞는 신부 감을 구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간음과 간통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완전한 수업』의 내용을 조금 생략하고 추가하면서 그대로 실었다.¹⁹⁾

19) Detler Roth, “Heinrich Bullingers Eheschriften”, in: 『Zwingliana XXX1』, (Theologischer

1. 결혼

로마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결혼에 대한 정의이다. 결혼을 교회의 영적인 법에 따른 신앙의 성례(Sakrament)로 여기는 개념은 12세기 스콜라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정의는 1274년에 확정되었다. 동시에 결혼과 결혼법은 순수한 교회의 업무로 규정 되었다.²⁰⁾ 또한 이혼, 비밀결혼, 금지된 근친상간, 부부의 성 그리고 사제들의 독신제도에서도 큰 견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는 “결혼이 옷이나 음식 집과 같은 외적인, 세속적인 것이고, 세속 정부에 속한 것”이고, “부부의 영혼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일들은 교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하였고,²¹⁾ 츠빙글리도 마찬가지로 결혼의 성례전적인 특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제정된 법이 바로 『취리히 결혼법령(1525)』이다. 불링거도 결혼의 성례성이 아닌 결혼의 세속적인 문제를 언급하였다.²²⁾ 그에 따르면, 결혼이 존엄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천지 창조 시 에덴동산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결혼에서 가장을 통해 영예롭고, 그리스도가 부부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부부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혼은 신성한 것으로 설명되었고, 수많은 교부들이 결혼하였으며, 결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에 있다.²³⁾

불링거에게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살고, 서로 돕는 것이다.” 이는 부부의 마음의 공동체(Gemütgemeinde)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사

랑과 고통이 공존한다. 그는 창세기 2장을 주석하면서 “결혼이란 제도 아래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둘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부부는 한 몸의 지체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서로 참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로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²⁴⁾ 또한 불링거에게 결혼은 고전 7장 1절에 근거하여 “죄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고 한다. 부부간의 성이 다소 소극적으로 다루어졌으나, 부부간의 성은 부부의 의무임과 동시에 죄가 없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더 나아가 결혼은 음행을 피하는 치료수단(Heilmittel)으로 묘사하였다.

성에 대한 주제 역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상반된 신학적 입장을 여실히 드러나는 주제이다. 중세 신학에서 부부의 성은 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반대로 불링거, 부처와 칼빈에게 부부의 성은 죄가 없는 것이고, 바울서신²⁵⁾에서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불링거는 부부의 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부의 침대를 “하나가 되는 화해의 장소”로 정의하였다.²⁶⁾ 『취리히 결혼법령』에서도 성에 관해서는 단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예의범절을 갖추라고 권고한다. 부부의 행위로 패를 끼쳐서는 안 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성에 대한 이야기해서도 다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제시하였다.

결혼에서 부모의 동의는 중요한 요소였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불링거도 부부가 되려는 사람들은 19세의 성인이 되었다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는 결혼의 최저나이는 부문장에서 간략

Verlag Zürich, 2004), 281.

20) 요약된 Leendert Brink, Art Ehe/Eherecht/Ehescheidung VI. Mittelalter, in: TRE 9, 1982, 330-336와 비교해보라. 위의 책, 286-287에서 재인용.

21) Martin Luther, Von Ehesachen, WA 30/III, 205. Detler Roth, “Heinrich Bullingers Eheschriften”에서 재인용, 282쪽.

22) Bullinger, Der christlich Eestand (Anm. 8), Bl. B2r.

23) Bullinger, Vollkommne vnderichtung (Anm. 34), Bl. 34r-39r.

24) 위의 책, A6v.

25) 고린도전서 7장 1절, 히브리서 13장 4절.

26) Bullinger, Vollkommne vnderichtung (Anm.) Bl. 76w. “Dann am bett soll man nitt verwysen/zanggen/ vnd kriegien: sunder wo ettwz spans gewasen hie widerumb eins werden.”

하게 언급하고, 그 대신에 일반적인 자녀에 대한 의무, 부모의 동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가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지라도, 부모는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²⁷⁾

“근친상간의 경우”에 결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종교개혁가들은 레위기 18장 6-1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촌시간의 친족들과 사돈 그리고 대부와 그 친족의 관계와 결혼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법은 『취리히 결혼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취리히 결혼법령』과 불링거는 초기 스콜라시대부터 발전되어 온 비밀결혼을 반대하였다. 지금까지 교회에서조차도 결혼예고나 사제들의 동의 없이 성립된 비밀결혼은 묵인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동의 없는 결혼, 증인 없이 거행된 결혼은 무효하다. 이 비밀 결혼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²⁸⁾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전적으로 로마가톨릭교회는 비밀로 하는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1563년에야 비로소 증인들과 목회자 없이 진행된 결혼은 무효한 것임을 선포하였다. 반면에 1525년 출판된 『취리히 결혼법령』에서는 이미 적어도 2명의 신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증인 없이 한 결혼은 무효한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²⁹⁾

2. 이혼

이혼에 관련하여서도 중세교회와 종교개혁가들의 상반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불링거는 결혼의 두 가지 측면, 즉 법적이고 공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법적인 측면은 정부의 과제로, 개인적인 측면은 목회자, 교

회의 과제로 설명한다. 법적인 측면을 다루는 국가는 결혼의 개인적인 측면에 개입하지 않는다. 단, 필요에 따라 상담가들의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³⁰⁾ 그러나 중세교회에서는 다르게 이해한다. 결혼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주고 은혜를 전달해 주는 성례이므로 어떠한 사유에서도 이혼이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취리히 결혼법 규정이나 불링거는 합당한 이혼의 사유가³¹⁾ 있을 경우에 이혼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링거는 이혼을 부부가 이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을 권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혼을 몸의 지체를 절단(glider abschnyden) 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최후에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취리히 결혼법령³²⁾』과 불링거는 간통, 성적 불능, 유기의 경우에 이혼을 허가한다. 첫째, 마태복음5장 32절과 19장9절의 말씀을 따라 공개적인 간통으로 이혼이 성립된다. 만일 배우자가 간통을 했을 경우, 무죄한 자는 다시 결혼을 할 수 있고,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는 사형에 처한다.³³⁾ 간통은 의지가 약해서 그리고 일시적인 기분으로 한 것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것을 구별하였고, 일시적인 것에는 빵과 물만 주고 6일 동안에 감옥에 가두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벌에 처했고, 상습적인 것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 둘째,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가 성적 불능자이거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셋째, 만일 배우자가 허락 없이 집을 떠나서 오랜 동안 아무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혼할 수 있다.³⁴⁾ 결혼을 성례로 여기는

27) Zürcherische Ehegerichtsordnung (Anm. 47), 185, 1-4, 과 Bullinger, Der christlich Eestand (Anm. 8), Bl. B8v.-C1r.

28) Bullinger, Der christlich Eestand (Anm. 8), Bl. B5v.

29) Zürcherische Ehegerichtsordnung (Anm. 47), 184, 11f. “one bywesen und gegenwürdigkeit zum minsten zweyer frommer, ersamer, unverworffner mannen”

30) Detler Roth, “Heinrich Bullingers Eheschriften”, 287쪽. 중세 시대에 결혼에 관한 내용은 독립된 문서가 아닌 십계명 해설이나 신학적인 문제들과 금언해설, 대부분 성례론에 관련된 처벌(Busssummen)의 내용과 함께 나온다. 독립된 결혼문서는 라틴어로 12세기에, 독일어로 15세기에 비로소 출판된다.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서술된 결혼에 대한 독립적인 문서로서 불링거의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1540』을 들 수 있다.

31) 칼뱅의 경우, 오직 간음과 유기에 한해서만 이혼을 허가하였다. Detler Roth, “Heinrich Bullingers Eheschriften”, 에서 재인용. 291쪽.

32) Zürcherische Ehegerichtsordnung (Anm. 47), 186, 13-21.

33) Bullinger, Der christlich Eestand (Anm. 8), C6v-O7r.

34) Zürcherische Ehegerichtsordnung (Anm. 47), 187, 13-16.

중세시대에서는 법적인 이혼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함께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혼을 한 사람들은 재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규범적 변화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새롭게 하였다. 『취리히 결혼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배우자의 잘못에 남녀의 구별이 없다. 한 배우자의 잘못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을 처벌하는 것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독신(Zöllibat)

츠빙글리는 그의 책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에서 중세 시대의 독신제도에 관해 비판하면서, 본래 결혼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예로운 것인데, 주교들은 오히려 합법적인 결혼은 금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³⁵⁾ 그에 따르면, 사제들은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제들에게까지도 영예롭게 살 수 있는 결혼을 금지하고,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강요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에게도 결혼을 금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성직자들에게 혼인을 금하는 것을 억지로 그들을 억압하는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러므로 츠빙글리는 수녀들, 수사들, 사제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고 영예로운 일임을 명백히 밝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혼하라(고전 8:9)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은 모든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영예로운 일이 된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교황주의자들만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성직자들의 독신제도가말로 로마가톨릭과 개신교의 결정적인 견해 차이

35) 홀드리히 츠빙글리,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391쪽. 박건택 편, 『종교개혁 사상 선집』 (서울:도서출판 솔로몬, 2010), 391쪽.

를 볼 수 있는 주제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자의 독신제도가 성서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⁶⁾ 인간학적인 관점에 따라 성욕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므로 결혼은 그것을 위해서 적합한 대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세의 성직자들은 순결(Jungfräulichkeit)을 소수의 훌륭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성직자들의 독신이 천사들의 삶과 견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생활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순결의 고결함과 결혼을 반대하는 견해에 대응하여 불링거는 결혼생활의 번거로운 것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들과의 교제 그리고 일상의 집안일들에 대해 변론해야만 했다.

루터나 루터주의자들은 그들의 십자가 신학에 결혼을 결부시켜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결혼은 십자가로 상징되고, 죄로 인해 버림받은 신앙인들이 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결혼생활은 오직 모든 번거로운 것을 극복하는 믿음 안에서 즐겁게 보일 수 있다.³⁷⁾ 그러나 불링거는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내는 순교자의 업적을 이행해야 한다는 그들의 견해에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결혼에서의 고생은 순교자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결혼 안에는 큰 즐거움이 있다. 이어서 그는 결혼과 순결은 대립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음행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황주의자들이 결혼제도 밖에서 저지른 더럽고 음란한 간음의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사제들의 독신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³⁸⁾

36) Detler Roth, “Heinrich Bullingers Eheschriften”, 299.

37) Martin Luther, Vom ehelichen Leben(Anm.96), 291. 위의 책에서 재인용 300쪽.

38) Bullinger, Der christlich Eestand (Anm.8), Bl. E5v. “Das der Bapst den Eestand den geistlich genannten wider Gott/ eer racht verboten habe.”

4. 생활의 지침들

1) 배우자 선택, 결혼식, 집안일 하기 그리고 자녀 양육

마지막으로 불링거는 결혼생활을 실제로 할 때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유의할 사항들³⁹⁾, 결혼식은 어떻게 거행되어야 하며⁴⁰⁾, 결혼식에서 약속을 상세하게 비난하였고, 어떻게 결혼식에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묘사하였다.⁴¹⁾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사는 부부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등 자세한 생활지침서가 들어 있다. 자녀양육에 관해서 불링거는 젖 먹이기 젖떼기, 목욕시키기, 밥 먹이기 잠재우기 장황하고 의학적인 충고까지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구체적인 아이들의 양육에서는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⁴²⁾

2) 동거, 부부의 사랑

불링거는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 “부부는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함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한다.”⁴³⁾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부부의 사랑과 신뢰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8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마음과 의

지”, “함께 섬기기”, “열정”, “부드러움과 인내심”, “정체가 아닌 진취적인 말”, “부부지간의 자녀”, “신뢰와 믿음 지키기”⁴⁴⁾ 등이다.

불링거는 함께 사는 것(Zusammenleben)을 언급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각 자에게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아내의 주요임무는 부부의 사랑이요, 남편의 주요 임무도 역시 부부 사랑이다.⁴⁵⁾ 아내와 남편의 모델은 예수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데, 몸의 지체와 머리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에베소서5장 22절에 근거하여 불링거는 부부 지간에 동등한 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몸의 지체와 머리이듯이 아내와 남편도 오로지 상호 상관적인 틀(Gegenseitigkeit)안에 있다. 즉 배려, 정성, 신뢰, 사랑 이러한 감정적인 관계.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지적인 관계 뿐 아니라 부부간의 더 긴밀한 관계가 된다면 남자에게 분명히 우선권이 인정될 것이다. 이는 분명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불링거 시대에 신랑과 신부에게 다른 역할과 의무가 주어진 것과 같이, 교육 역시도 소녀와 소년이 다르게 받았다. 소년에게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통해서 수공업을 통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배웠고, 소녀들은 장차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최대한 수습하게 행동하는 교육을 받아야 했다.⁴⁶⁾

IV. 결론

16세기 개신교 도시 취리히를 위해 츠빙글리를 중심으로 제정된 『취리히 결혼법령』과 그의 후계자 불링거가 제안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생활』은 중

39) Bullinger, Vollkommene vnderichtung (Anm. 34), Bl. 49v. 한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할 경우에, “당신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당신이 나와 결혼하여 모든 걸 함께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당신과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라는 답변을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0) 위의 책, Bl. 51v. 결혼식에 대해 쓴 장에서 불링거는 신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방금 결혼한 신랑에게 “너는 즐겁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아주 현명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라. 너의 신부가 행복하고 기뻐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고 즐거이 반겨라. 그리고 신부는 이러한 사랑스럽고 훌륭한 남편을 잘 돌보라”고 충고하였다.

41) Bullinger, Der christlich Eestand (Anm. 8), Bl. H7v-J3v.

42) Bullinger, Vokommne vnderichtung (Anm. 34), Bl. 104r-112v.

43) Bullinger, Der christlich Eestand (Anm. 8), Bl. K 1v.

44) 위의 책, Bl. K7 r-v.

45) 위의 책, Bl. J6v-K1v. “was die Eelüt von Gottes gebotts wagen einandren schuldig syend/ namlich ordentliche gehorsame vnnd Eeliche/ das ist die hochsten/ liebe.”

46) 위의 책, Bl. L1v-M2v, N1r/N4v und O2rO5v.

세 교회의 규정과 달리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성례로서 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결혼을 법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법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으로까지 그 의미를 넓혔다. 부모의 강압에 의한 강제적 결혼에서 자녀를 보호하였고, 비밀결혼을 금지하였으며,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 뿐 아니라 증인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의 참여를 강조하였고, 무엇보다 결혼 안의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결혼이 부부의 사랑과 화해의 장소임을 일깨워주었다. 사제들의 독신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비판하면서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예로운 것임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결혼생활 지침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결혼 안에서 위계질서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동일하게 사랑의 의무를 갖는다. 사랑과 신뢰의 상관성으로 맺어진 부부는 결혼의 가장 기본 성립 조건이요, 필수 요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혼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성서적 근거에 의해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을 허락하였지만, 이것은 부부가 이별을 하지 않고 화해하게 하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16세기 취리히의 결혼제도 안에는 남녀 차별이 존재하였다. 결혼에 대한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나이도 남녀가 서로 달랐고,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을 몸의 지체와 머리의 관계로 설정하여 남편의 우선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분명 시대적 한계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종교개혁 이후 취리히 시에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를 『취리히 결혼법령 1525』과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1540』을 통해 알아보았다.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츠빙글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지침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 권세를 말하였다.⁴⁷⁾이어서 그는 세속권세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항들을 9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조항에서 세속권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련된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⁴⁸⁾고 하였다.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찾고, 중세 교회 안에서 행해진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고, 법적인 장치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른 지침들을 제시한 『취리히 결혼법령 1525』은 세속권세와 신앙생활에 관한 츠빙글리의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법령 안에 결혼재판의 과정과 준비사항 등의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와 가정에서 법이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불링거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1540』에서 1525년의 법령을 계승하면서도 배우자의 선택 사유의 사항, 결혼식의 규정, 집안 일, 자녀 양육 등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성서에 근거해서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 원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혼란 속에서 무질서하게 치러지던 결혼은 종교개혁가들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증인들과 목회자의 축복 속에서 거행되었다. 건전하고 건강한 결혼은 사랑과 신뢰의 울타리를 가진 가정으로 결실되었고, 이들 가정들이 도시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었다. 이렇게 16세기의 취리히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사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16세기 취리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신앙의 교리와 신학적 논제들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취리히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집중하였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

47) 츠빙글리,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410쪽.

48) 위의 책, 411-412쪽. 한편 당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위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국은 외적 악행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인간의 내면을 옳다 그르다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에서 그 일을 하신다. 3. 당국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나 금지하지 않으신 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 5. 당국은 하나님 경외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련된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7. 만일 위정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슬러서 행동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한다면, 도리어 그가 하나님에 의해 처벌될 것이다. 8. 만일 위정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처벌될 것이다. 9.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말과 계명을 통해 철저히 그에게 매달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에 있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취리히 교회는 현재 큰 변화 가운데에 있다. 츠빙글리가 목회했던 그로스뮌스터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던 취리히 시내의 34개 지역교회들을 하나로 교회로 합병한 것이다. 2014년 9월에 결정된 일이지만, 다양한 연구와 준비과정을 통하여 츠빙글리가 취리히에서 본격적인 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되는 2019년부터 새로운 시 교회가 출범한다. 스위스의 개혁교회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들의 삶과 행동으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스위스를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언급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박경수. “16세기 제네바의 약혼, 결혼, 이혼에 관한 법령에 관한 연구”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장신논단』 40/2 (2015.6): 44-68.
- 츠빙글리, 홀드리히.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박건택 편. 『종교개혁 사상 선집』.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0, 351-413.
- Beglinger, Martin. “Wir Protestanten.” Wie die Reformation die Schweiz reich gemacht hat.: in *Neue Zürcher Zeitung Geschichte Nr. 2 Juli* Neu Zürcher Zeitung (2015), 24-39.
- Bullinger, Heinrich. *Der christlich Eestand Zürich: Christoph Froschauer 1540* (HBBBibl 1, Nr. 129)
- _____. *Vollkommene vnderichtung*, Zürich, Zentralbibliothek, Ms. D 200. Bl. 31r-128v.
- Campi, Emidio. “Erbe und Wirkung der Zürcher Reformation” in : *Christliche Arbeitsmoral, Sozialstaat und Globalisierung*,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7), 39-50.
- _____. und Philipp Wälchli. *Zürcher Kirchenordnungen 1520-1675*.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1), 27-31.
- Egli, Emil. *Actensammlung zur Geschichte der Zürcher Reformation in den Jahren 1519-1533*, Zürich 1879. Nr. 711. 326-329.
- Escher, Hermann. “Zwingli als Staatsmann”, in: *Zwingliana V*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31/5-6), 297-317.
- Köhler, Walther. *Zürcher Ehegericht und Genfer Konsistorium*. 2 Bd. (Leipzig, 1932/1942). (Quellen und Abhandlungen zur Schweizerischen Reformationsgeschichte 10 und 13) I. Das Zürcher Ehegericht und seine Auswirkung in der deutschen Schweiz zur Zeit Zwinglis.
- Roth, Detler. “Heinrich Bullingers Eheschriften” in: 『Zwingliana XXXI』,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4), 275-309.